

과세가격결정자료 ☐ 미제출 ☐ 지연 제출 사유서			
① 납세의무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			
②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성명		③ 가격신고서 작성 책임자 전화번호	
④ 대상 물품(HSK)			
⑤ 미제출 사유	① 별표 제8호 각 분야의 거래 사실 없음 ☐ 예 ② 별표 제8호 각 분야의 거래 사실 있으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☐ 예 ※ ②의 경우 미제출 사유를 상세히 작성 ▪ 사유 :		
⑥ 지연 제출 사유 (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제출)	① 수출자의 자료 협조 지연 ☐ 예 ② 수입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지연 ☐ 예 ③ 기타 () ☐ 예		
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·지연 제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 20 년 월 일 납세의무자 (서명 또는 인) ○ ○ 세관장 귀하			
※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5항에 따라 ‘미제출 사유서’를 제출하는 경우, 세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,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			